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36호 2026. 10. 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 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105호)

공 고

○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284호)

○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1285호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08일

예 천 군 수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안병윤(재단법인 예천문화관광재단) (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9-15, 문화회관2층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7,248,310-1번지
점용면적	27,500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(2026년 예천활축제장)
사업개요	축제장 운영에 따른 임시시설물 설치
점용기간	2026년 10월 08일 ~ 2026년 11월 07일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의 표준화 및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관사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관사의 직위별 구분(1급·2급·3급) 폐지(안 제51조)
- 나. 관사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(안 제56조)

- 관사 운영비 중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시설유지관리비로 한정
- 전기·수도·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

4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ldo898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재무과

3) 팩스 : 054-650-68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(전화: 054-650-6890)에 문의하여 주시기
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
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중 “소속공무원”을 “소속직원”으로 “공하기”를 “제공하기”으로 한다.

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1조(관사의 사용기준)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군수 및 부군수 또는 소속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2조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3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공무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2호 중 “관리비(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)”를 “관리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응접셋트, 카텐”을 “응접세트, 커튼”으로, “경비(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)”를 “경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7조 중 “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”를 “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의 “공무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0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사”라 함은 군수·부군수 또는 기타 <u>소속 공무원의</u> 사용에 <u>공하기</u>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.	제50조(정의) ----- ----- <u>소속직원</u> ----- <u>제공하기</u> -----.
제51조(관사의구분)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. 1. 1급 관사 : 군수 관사 2. 2급 관사 : 부군수 관사 3. 3급 관사 : 시설관리사·기타 관사 등	제51조(관사의 사용기준)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. 1. <u>군수 및 부군수 또는 소속직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2. <u>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제52조(사용허가)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<u>허가한다</u> . 다만, <u>1급·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</u> 를 요하지 아니한다.	제52조(사용허가) ----- ----- ----- <u>허가한다</u> .
제53조(사용책임) 관사를 사용하는 <u>공무원</u> 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53조(사용책임) ----- --- <u>직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54조(관사관리대장의 비치) 관 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의 고유 관리번호 와 사용대상 <u>공무원의</u>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.	제54조(관사관리대장의 비치) -- ----- ----- ----- <u>직원</u> ----- ----- -----.
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	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건물유지 수선비,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<u>관리비</u> (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)	2. ----- ----- <u>관리비</u>
3. 보일러 운영비(1급부터 2급 까지의 관사에 한한다)	<삭 제>
4. 응접세트, 카텐 등 기본 장식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 른 경비(1급부터 2급까지의 관 사에 한한다)	4. <u>응접세트, 커튼</u> ----- ----- ----- <u>경비</u>
5. 전기요금(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에 한한다)	<삭 제>
6. 전화요금(1급부터 2급까지의	<삭 제>

<u>관사에 한한다)</u>	
<u>7. 수도요금(1급부터 2급까지의</u> <u>관사에 한한다)</u>	<u><삭 제></u>
<u>8.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</u> <u>관리비(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</u> <u>한한다</u>	<u><삭 제></u>
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<u>제51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 관사</u>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.	제57조(사용료의 면제) <u>관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용대상 <u>소속공무원</u> 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	1. ----- <u>소속직원</u>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시설의 보호·감시 등을 위하 여 해당 <u>공무원</u> 이 사용하는 경우	3. ----- ----- <u>직원</u> ----- ---
<신 설>	<u>4.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경우</u>

예천군 공고 제2026-1285호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8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

조항 정비(안 제34조)

4. 개정규칙안

○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wldo898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재무과

3) 팩스 : 054-650-689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(전화: 054-650-6890)에 문의하여

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
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규칙 제 호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제1항 본문 중 “사용대상공무원”을 “사용대상 직원”으로 하고,
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 직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관사관리)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<u>사용대상공무원</u> 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<u>사용대상공무원</u>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<u>소속 공무원</u>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	제34조(관사관리) ① ----- 제51조에서 규정한 <u>사용대상직원</u> ----- ----.----- <u>사용대상 직원</u> ----- ----- <u>소속 직원</u>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